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4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체육청소년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체육청소년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,
- 기존 다자녀 가정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0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 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」을 반영하여 사용료 등의 반환에 “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기준”을 정비하였습니다.
- 별표3 제5호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신당체육센터 사용료를 기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으로 신설하였으며,
- 별표 4 중 사용료 등의 감면에 “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.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24. 10. 2일부터 10.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4. 11. 5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조례 개정으로 직접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「소비자 분쟁 해결기준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조례 정비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,
- 기존 다자녀 가정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니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0092 4119
----------	-----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4. 11. 6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체육청소년과장)

1. 제안이유

-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에 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대하고,
- 기존 다자녀 가정 이용료 징수 및 감면 대상을 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 보다 나은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사용료 등의 반환에 “이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 귀책으로 인한 위약금 배상 기준”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으로 반영(안 제10조제1항)
-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신당체육센터 사용료를 기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으로 신설(별표 3 제5호)
- 사용료 등의 감면에 “자녀 세 명 이상에서 두 명 이상”으로 확대(별표 4)

3. 개정조례안: 붙임 참조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 참조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24. 10. 2.~10. 22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행정규제 심사결과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.
- ②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

별표 3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3】

체육시설별 사용료(제8조 관련)

5. 신당체육센터

가. 체육센터 사용료

(단위:원)

시설명	사용구분	사용기준		사 용 료		비 고
				주간(06~18시)	야간(18~22시)	
다목적 체육관	전용사용 (4시간 기준)	체육경기	평일	40,000	50,000	
			토, 공휴일	50,000	60,000	
		체육행사	평일	50,000	60,000	
			토, 공휴일	70,000	80,000	
	개인사용	일일회원		2,000		· 1일 이용 (2시간 기준)
		월회원		25,000		
다용도 강좌실	생활체육 프로그램	에어로빅, 요가, 댄스 스포츠 등 (1개월)		30,000 ~ 60,000		· 프로그램 과목, 시간 및 수준별 요 금 적의 조정
비 고	1. 체육경기: 공인체육경기, 국제경기,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(대한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) 또는 위 단체의 회원종목단체(가맹단체) 및 지회(지부)가 주관(주최)하는 경기를 말함. 2. 체육행사: 체육경기 이외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함. 3. 모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. 4. 복합프로그램 운영 시 복합프로그램을 합한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					

나. 부대시설 등 사용료

(단위: 원)

구분 종목별	사용기준	금 액	비 고
방송(음향)시설	1회	30,000	· 마이크 1회 2개(기본), 초과할 때 1개당 5,000원 가산(오전·오후· 야간 1회)
빔프로젝트	1회	20,000	
다목적전광판(LED)	1회	50,000	
바닥 보호매트	1회	30,000	· 원상복구 조건
냉·난방	1회 기본료 (3시간)	30,000	· 오전, 오후, 야간 전용사용 시 1 회 사용기준 ※ 사용기준 초과할 때는 시간당 기본료의 1/3을 추가
개인사물함	1개월	5,000	
	3개월	10,000	

※ 부가가치세 포함

【별표 4】

사용료 등의 감면(제9조 관련)

구 분		감면율 (할인율)	비 고
전용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 등			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		전액면제	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		50%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		50%	
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		50%	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		50%	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		50%	
개인사용료(초과사용료 포함), 강습료, 프로그램 수강료 등		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	50%	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		50%	
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		50%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		50%	
어린이·청소년 및 노인	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(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)	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	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		30%	
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		30%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<u>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천재지변 등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</u> 2. <u>허가자의 특별한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.</u> 3. <u>시설의 고장 및 하자 등 관리·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</u> 4. <u>그 밖의 사용료(전용사용료, 상업사용료, 강습료, 프로그램수강료, 개인사용료, 부대시설사용료 등)는 각각에 해당하는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</u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 ① <u>사용자의 취소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, 사용료의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.</u></p> <p>② <u>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.</u></p>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소비자기본법

제4조(소비자의 기본적 권리)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
5.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·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
제16조(소비자분쟁의 해결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·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.

□ 소비자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소비자분쟁해결기준) ①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.

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④공정거래위원회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소비자단체·사업자단체 및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(이하 "분쟁당사자"라 한다)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피해구제청구)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.

제3조(품목 및 보상기준)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, 품목별분쟁해결기준,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,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I, 별표 II, 별표 III, 별표 IV와 같다.

56. 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(3개 업종)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-2)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1)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	○ 계약해제	*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「회원제 체육시설업」 제외 ·회원제 골프장업, 스키장업, 요트장업,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
2) 시설고장,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	○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	
3) 신체상 피해발생	○ 배상액 배상	
4)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개시일 이전	○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 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	
		* 개시일이란, 계약내용
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1-2)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- 개시일 이후	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% 배상	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,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.
체육시설업, 레저용역업, 할인회원권업 (2-2)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5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- 개시일 이전 - 개시일 이후	○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 ○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은품 반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증도 해지 시 · 사은품 미사용 시 : 해당 사은품 반환 · 사은품 사용 시 :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울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(단,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.) ·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: 현존상태로 반환 -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·해지 시: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. ○ 체육시설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영장, 체력단련장, 테니스장, 대중종합체육시설업, 골프연습장 등 ○ 레저용역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벤트 주관, 주말농장, 영화예매 등 ○ 할인회원권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,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		

61.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(2개 업종)

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		
분쟁유형	해결기준	비고
1)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- 허위·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-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-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(단,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)	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 ○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	*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 학교교과 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함.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. * 계약 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함.
2)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	○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	* 일할(日割)계산
3)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	○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	* 일할(日割)계산 하여 사유발생일로 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함.
4)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- 교습개시 전 - 교습개시 후 ·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이후 · 교습기간이 1월 초과	○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○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급 ○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급 ○ 미환급 ○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.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	*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함.

□ 지방자치법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